

2026년 제5회 여주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(재공고)

2026년도 제5회 여주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.

2026년 6월 12일
여주시인사위원회위원장

1. 채용분야 및 인원

채용분야 (근무부서)	임용직급	인원	임기	근무 시간	직 무 내 용
보도기획 (홍보감사 담당관)	지방시간 선택제 임기제 다급	1 명	1년	주 35 시간	○ 기획보도, 특집기사 등 작성 ○ 기고문, 각종 인터뷰 자료 작성 ○ 각종 행사, 축제, 회의 인사말, 연설문 작성 ○ 언론 모니터링 및 기타 업무분장에 따른 홍보 관련 업무
농산물종합 가공센터 운영요원 (기술기획과)	지방시간 선택제 임기제 다급	1명	1년	주 35 시간	○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○ 농산물 가공제품 생산 및 품질관리 ○ 품목제조보고 및 시설 위생관리 ○ 가공기술 개발·표준화·시제품 제작지원 ○ 농업인 대상 가공창업교육 기획 및 운영 ○ 농산물 가공 관련 시범사업 ○ 기타 농산물가공 관련 업무

2. 법령 근거

-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
-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
-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
- 여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

3. 응시자격 기준 (기준일: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)

□ 공통 요건기준
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 및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 등 다른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
- 주소지·성별·연령 제한없음
-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병역을 면제받은 자
- 「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」의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

〈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 〉

1. 피성년후견인
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 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 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하여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가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

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

나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

다.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

라.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

마.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
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〈 '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'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 〉

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
2.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)

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(이하 “비위면직자등”이라 한다)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
1. 공공기관(「유아교육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·공립학교를 포함한다)

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
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

4.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(이하 “협회”라 한다)

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.

1.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: 퇴직일

2.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)를 받은 경우: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

3.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: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

4.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: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된 날 또는 사면,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

5.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: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

6.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: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

□ 분야별 응시 자격기준

※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관련 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(시간선택제임기제, 한시임기제는 10년)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(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17조 제5항)

채용분야 (근무부서)	임용직급	자 격 기 준
보도기획 (홍보감사 담당관)	지방시간 선택제 임기제 다급	▶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1.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 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.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.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○ 관련분야 학사학위 : 신문방송학, 언론정보학,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 등 관련분야 또는 국어국문학, 문예창작학 등 유관 전공자 ○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: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언론기관(방송사, 신문사 등)의 공보, 언론 정보·취재 보도, 작가 업무 등
농산물종합 가공센터 운영요원 (기술기획과)	지방시간 선택제 임기제 다급	▶ 다음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.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2.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3.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※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또는 민간부문 등에서 식품가공 관련 업무(식품생산 및 품질관리 등) 근무 경력 ※ 우대사항 -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식품안전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

-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 및 자격증은 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유효하여야 함.
-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
- 비정규직, 비상근 경력은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, 프리랜서, 자원봉사,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보수 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제출하여야 함(미제출시 불인정)
- ※ 시간제 근무자의 경력 인정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을 인정함(응시자가 입증서류 제출 예시)종전 계약직 및 임기제공무원 등으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: 2년 인정
- 「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」에 따라 일반(시간선택제)임기제공무원의 상위 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

4. 보수 및 복무

□ 보 수

-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경우 직급별 연봉하한액(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3*)을 원칙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연봉을 책정함
- 단, 한시임기제 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경우, 「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」에 따라 「공무원 보수규정」 별표30의2**에 따른 봉급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함
- 채용 분야별 연봉액

채용분야	채용 직급	근무시간	연봉(천원)	비고
보도기획	지방시간 선택제임기제 다급	주35시간	43,988	하한액×(35/40)
농산물종합 가공센터 운영요원	지방시간 선택제임기제 다급	주35시간	43,988	하한액×(35/40)

※ 일반(시간선택제)임기제 9급 상당의 경우 법령상 하한액이 없어 여주시 자체 방침에 따라 결정

*2026년 임기제 공무원 봉급액 기준표(주40시간 기준,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3 발취)

(단위 : 천원)

구분	상한액	하한액
5급(가급 상당)		69,663
6급(나급 상당)	86,606	57,708
7급(다급 상당)	70,782	50,272
8급(라급 상당)	62,096	44,296
9급(마급 상당)	54,678	

- 연봉 외 급여 :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지급

※ 가족수당, 초과근무수당, 연가보상비, 직급보조비, 정액급식비 등

※ 고용보험 임의가입 시기 안내 :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,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,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 할 수 없음 (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)

□ 복 무

- 지방공무원법 제48조부터 제58조까지, 여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
-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나, 사업의 필요성 등 기관 사정에 따라 근무기간 연장이 불가할 수 있음

- 근무상황과 업무추진 실적을 정기 또는 수시 평가하여 근무기간 연장에 반영

5. 시험일정 및 시험 방법

□ 응시원서 접수

○ 접수기간 : 2026. 6. 23.(화) ~ 6. 25.(목)

○ 접수방법 :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

① 방문접수(대리접수 가능)

- 접수시간 : 09:00 ~ 18:00 [점심시간(12:00~13:00) 제외]
- ※ 접수마감일 18:00 이후 원서접수 불가
- ※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접수 불가
- 타인이 응시원서 제출 가능
- 여주시청(민원토지과)에서 증지수수료 납부 후 응시원서 제출

② 등기우편 접수

- 원서접수 마감일 18:00까지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함
- 택배 및 퀵서비스 접수 불가
- 응시분야직급의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우편통상환을 우체국에서 구입·동봉
- ※ 대한민국 '정부수입인지'사용불가
- ※ 우편통상환의 받는 사람을 빈 칸으로 두어야하며, 뒷면 기재 절대 금지
- 우편봉투 겉면에 '2026년 제○회 여주시 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'문구 표기
- 우편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한 경우 응시표는 서류전형 전까지 이메일로 회신 예정이므로 이메일 주소 반드시 기재 요망

○ 접수장소 : 여주시청 총무과 인사팀

※ 주소 :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1, 우)12619

□ 시험일정

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	면접시험		최종합격자 발표일
	일 시	장 소	
2026. 7. 3.(금)	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	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	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

※ 재공고(연장공고)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시험일정은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하지 않으므로, 시험관련 각종 사항은 여주시청 홈페이지 "시험정보"란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함

※ 위 일정은 응시인원,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음

□ 시험방법

○ 1차시험 : 서류전형 (직무수행 관련 자격·경력 및 구비서류 등 심사)

- 응시자의 자격·경력 등이 채용자격요건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
-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.(지방공무원임용령 제55조 제4항)
- ※ 서류전형기준은 직무 연관성, 경력 및 업무실적, 직무관련 자격증, 기타 업무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 등을 기준으로 인사부서에 별도 설정·시행

○ 2차시험 : 면접시험 (직무수행 능력 및 적격성 검정)

-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,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,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적격성 종합 평가
- 평가기준 : 5개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, 중, 하로 평정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| ② 전문지식과 응용 능력 |
| ③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| ④ 예의·품행 및 성실성 |
| ⑤ 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| |

- 평가방법 :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,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·응답
- 합격자 결정방법
 -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되, “상”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이고, “상”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“중”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
 - 면접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
- 불합격 기준
 -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“하”로 평정하였거나,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“하”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
 - 면접 포기자 및 면접 불참자는 불합격

○ 최종합격자 발표 : 여주시청 홈페이지(시험정보)에 공고

- 임용후보자 등록 : 임용후보자 등록 후 신원조회, 채용신체검사 등에서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 임용 자격이 부여됨
- 추가합격자 결정 : 면접시험 결과에 따른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.

6. 제출 서류

○ 공통사항

- ❖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(졸업증명서, 경력증명서 등)는 반드시 공증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.
- ❖ 모든 증빙서류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(단, 어학능력은 2년 이내) 발행분에 한하며, 제출서류 중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❖ 응시원서, 이력서,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 사용
- ❖ 제출서류 접수 시 **스테이플러, 클립 등 사용 금지**
- ❖ 모든 제출자료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나, 부득이한 경우 원본지참 후 확인된 사항은 사본 제출 가능

○ 제출서류 목록

구 분	내 용	비 고
1. 응시원서 1부 (별지 제1호 서식)	○ 응시 수수료 납부 후 제출 *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는 사용 불가 ※ 5급(호)가급: 1만원/6~7급(호)나 다급: 7천원/8~9급(호), 라 다급: 5천원 - (방문접수) 여주시 수입증지 수수료 납부(여주시청 민원토지과) - (우편접수) 우편통상환 구입·동봉 ★ 우편통상환 구입은 금융업무이므로 우체국 마감시간 유의 ★ 우편통상환의 받는 사람을 빈 칸으로 두어야 하며, 뒷면 기재 절대 금지 ※ 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보호대상자, 「장애인연금법」에 따른 수급자, 또는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로서 응시 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하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, 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	필수
2. 이력서 1부 (별지 제2호 서식)	○ 증명서류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기재 ※ 이력서 상의 경력과 자격은 기재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함	필수
3. 자기소개서 1부 (별지 제3호 서식)	○ A4용지 2장 이내	필수
4. 직무수행계획서 1부 (별지 제4호 서식)	○ A4용지 3장 이내	필수
5.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의견서 1부 (별지 제5호 서식)	○ 응시분야만 발췌 후 해당 자격기준 선택(해당 없는 사항은 삭제)	필수
6.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 정보 처리 동의서 1부 (별지 제6호 서식)	○ 임기제공무원 채용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서	필수
7.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	○ 국민건강보험공단(http://www.nhis.or.kr)에서 발급 ○ 미해당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제출 가능 ○ 경력과 관련된 사업장(회사)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·제출	필수
8. 최종학력졸업(재학)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	○ 고졸자는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○ 박사 또는 석사학위 보유자는 모든 학위증명서 제출	필수
9. 응시자격과 관련된 자격(면허)증 사본 각 1부	○ 발급년월일 및 자격증 번호가 선명하게 나온 사본(원본 지참) ○ 갱신 또는 재발급한 사실이 있을 경우 갱신 또는 재발급한 사본 ○ 유효기간이 만기되어 있는 구 자격증 → 최신 자격증 갱신 사본	해당자만 제출

구 분	내 용	비 고
10. 주민등록 초본 1부.	○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○ 별지 제7호 서식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사전 동의한 경우는 제출 불필요	필수
11. 경력(재직) 증명서 (별지 제8호 서식)	○ 상근/비상근 여부, 비상근 시 1일, 1주당 근무시간 반드시 기재 -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, 프리랜서, 자원봉사,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함. 미제출시 불인정 -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 발생 시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 등 증빙자료 제출 ○ 근무기간(연월일까지 기재), 담당업무내용, 발급기관(회사) 직인, 발급담당자 날인 및 전화번호 등을 명시하여야 함 ○ 담당업무내용에는 채용 분야와의 업무연계성이 잘 나타나도록 상세히 작성 ○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, 본인이 경력증명서(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)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.(근무기간, 직위(급), 담당업무 기재) ○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 미기재 및 모호하거나 불분명하여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분야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, 응시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○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본 첨부	필수
12.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(별지 제9호 서식)	○ 관련분야 학위를 요건으로 하는 시험만 해당 (추가필수자격요건 또는 우대요건이 있는 경우에 한함)	해당자만 제출
13.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 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(별지 제10호 서식)	○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9조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은 공공기관에 취업이 제한되어 지원자 본인의 사전 확인 절차임	필수
14. 기타 증빙서류	○ 관련분야 또는 정보화 자격증 ○ 어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(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2년 이내의 것만 인정) ○ 관련분야 연구실적(논문, 저서 등) - 연구논문 등 분량이 많을 경우 경우 1매 이내의 요약서 첨부 ○ 관련분야 수상실적(기관명, 수상자(단체 불인정), 공적 등 기재된 것만 인정)	해당자만 제출

7. 기타 유의사항

-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-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서접수는 가능할 수 있으나, 심사과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여주시 인사위원회에서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.
-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(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)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

(예 : 졸업증명서)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. 단,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.

-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(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)에는 1회 이상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.
- 관련분야 근무경력 인정 여부는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서류(경력 또는 재직증명서 등)를 기준으로 서류전형에서 심사결정하며,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음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.
- 응시서류의 누락, 미비, 기재착오, 자격미비자의 응시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. (보완서류 제출은 원서접수 기간 내에만 가능함)
- 재공고 시, 서류전형을 통과한 응시자는 기 접수 응시서류로 갈음합니다.
- 채용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,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따라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·변조 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.
- 보수 및 복무는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, 「여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」, 「여주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」 등 관련 법령을 적용합니다.
-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공무원연금법이나 군인연금법,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·군인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합니다.(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1항)
-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은 추후 시험위원 구성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금회 시험에 한하여 면접응시자 본인의 면접점수(결과)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할 경우 평가결과를 종합한 상·중·하의 개수를 공개합니다
 - 과거 치렀던 시험의 면접점수 공개는 불가
 - 청구자격은 응시자 본인에 한하며, 면접시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

되는 경우 비공개 할 수 있음.

○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여주시청 홈페이지 시험정보에 공고합니다.

○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채용절차 관련 문의 : 총무과 인사팀 (☎031-887-2117)
- 직무내용 관련 문의

분 야	채용직급	채용부서	연락처
보도기획	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	홍보감사담당관	031)887-2062
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요원	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	기술기획과	031)887-3717